보도자료

7월1일부터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도 산재보상

–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산재보험법상 특고 신규지정

–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도 보상 가능

– 적용제외 사유제한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내실화 병행 추진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그간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총 **27.4만명**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한다고 밝혔다.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개정
(공포일 : '20.1.7, 시행일 : '20.7.1)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

○ 현재도 **9개 직종*** 특고 종사자는 **별도의 특례제도**를 통해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건설기계기사, 골프장캐디,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그러나 전체 특고 규모에 비하면 **산재보험 보호를 받는 특고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 (전체 특고) 166~221만명 ↔ (산재보험 적용 특고) 49만명

○ 이에 보다 많은 특고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방문서비스 종사자***(4개 직종, 19.9만명) 및 **화물차주****(7.5만명)를 **산재보험 적용 특고 범위에 추가**한 것이다.

* ① 방문판매원 ②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③ 방문교사 ④ 가전제품 설치기사

** ① 수출입 컨테이너 ② 시멘트 ③ 철강재 ④ 위험물질(인화성 물질 등) 운송 화물차주

□ 금번 신규 적용 대상 특고 종사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 적용**되어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 없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에게 전액 징수하되, 사업주는 특고종사자 부담분(50%) 원천징수

** 종사자 본인이 적용제외 신청하지 않았는데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하되, 사업주에게 지급 보험급여의 50% 징수

□ 금번 확대되는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다.

❶ 방문판매원 (11만명)

○ **가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하여 **상품이나 서비스**(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상조상품 등)를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방문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을 말한다

○ 다만 업계 특성*을 감안하여 **상시적으로 방문판매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판매원****은 제외한다.

* 자가 소비(할인 구입) 목적 또는 등록 후 활동하지 않는 판매원도 일부 존재

** ① 월 소득 521,700원 이상 ② 월 종사시간 18일 이상 ③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판매원

❷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3만명)

○ **가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하여 고객이 구입한 **대여제품**(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활동**(필터교체, 청소상태 점검 등)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 **전체 대여제품 방문점검원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한다.

❸ 방문교사 (4.3만명)

○ **회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학습지 교사**(4.7만명)와 **기타 방문 교사***(4.3만명)**로 구분**되며,

* 장난감, 피아노, 미술, 컴퓨터 등 학습교재·교구 등을 활용하여 방문 지도

○ 이미 산재보험 보호를 받고 있는 학습지 교사에 더해 **기타 방문 교사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학습지교사**에서 **전체 방문 교사로 확대**한다.

❹ 가전제품 설치기사 (1.6만명)

○ **가전제품을 배송·설치**하고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으로서 **대형 가전 설치기사와 소형 가전 설치기사로 구분**되는데

* 대형 가전은 주기사가 보조기사를 고용하여 2인 1조로 배송·설치,
소형 가전은 설치기사 1인이 단독 배송·설치

○ 이 중 소형 가전 설치기사 등 **단독으로 작업하는 설치기사** (1.6만명)**를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한다.

* 대형가전 주기사는 사업주(임의가입), 보조기사는 근로자(당연 적용)로 보호 (현행과 동일)

❺ 화물차주 (7.5만명)

○ 본인 소유 영업용 화물차로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사람**으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 중

○ ①**수출입 컨테이너** ②**시멘트** ③**철강재** ④**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가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에 해당된다.

* 인화성·발화성 물질,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방사성폐기물, 지정폐기물 등

□ 이와 함께 직종별 소득수준 실태조사*,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와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기준」**도 고시하였다.

*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등 고시를 위한 소득수준 실태조사」(여성정책연구원, '20.2월~5월)

○ 직종별 **기준보수**는 특고 종사자 및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평균소득이 아닌 **중위소득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 5개 직종 모두 상·하위 10%를 제외한 평균 소득보다 중위소득이 더 낮게 나타남

【신규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 기준보수 및 평균임금】

(단위:원)

구분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기준보수 (月)	1,597,500	1,392,000	1,016,300	2,932,000	4,310,000
평균임금 (日)	53,250	46,400	33,877	97,733	143,667

***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재해보상 시 최저보상기준이 적용됨**

○ **보다 많은 방문판매원**이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①월 소득 521,700원 이상 ②월 종사일수 18일 이상 ③사업주 인정 중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판매원**으로 인정하고,

- **월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 방문판매원이 이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기간이 발생**하더라도 **계속하여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였다.

□ 금번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종사자가 크게 증가**하고, (48.6만명 → 76만명, 56.3%)

○ 그간 **일하다 다치더라도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총 2.4만명**('20~'25년)이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기존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의 **적용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 종사자 본인과 사업주 부담 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입법예고 (7월중~)

○ **현재** 특고 종사자는 **사유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부상·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특고 종사자가 적용제외 신청 이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 불가

○ 아울러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모든 사람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을** 적절히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 "산재보험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포함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의 실질적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김용주 서기관(☎044-202-7712)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붙임 1 산재보험 특고 특례적용 제도 개요

□ **(개념) 산재보험법**은 특고의 개념적 징표로 ①**전속성**, ②노무제공의 **계속성**, ③업무 수행의 **비대체성** 명시

< 현행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적용방식) 당연적용 →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종사자는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산재보상 가능**

○ 적용을 원하지 않는 특고 종사자는 **사유에 관계없이 적용제외 신청가능 → 적용제외 신청 시 보상 불가**

<법적 지위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관계>

구분	근로자	특고	자영업자
적용방식	당연적용	당연적용	임의가입
보험료 부담	사업주	사업주와 본인1/2	본인 100%
미가입시 보상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 가능** * 단 특고는 적용제외 신청 시 보상 불가		미가입시 보상 불가

□ **(보험료) 특고 보험료는** 「직종별 기준보수 × 업종별 보험요율」로 산정, **사업주**와 **특고 공동 부담** (각 1/2)

【신규 산보험 적용 특고 기준보수 및 보험료】

(단위: %, 원)

구분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기준보수	1,597,500	1,392,000	1,016,300	2,932,000	4,310,000
산재보험요율	0.93	0.83	0.93	0.93	1.93
보험료	14,857	11,554	9,452	27,268	83,138
종사자 부담분	7,428	5,777	4,726	13,634	41,592

○ **사업주에게 전액 징수**하되, **사업주가 종사자 부담분**(50%) **원천징수**

붙임 2 특고 직종별 기준보수 및 보험료

(단위: 원)

구분		기준보수(월)	평균임금(일)	보험료율	보험료(월)	종사자 부담
방문판매원		1,597,500	53,250	0.93%	14,857	**7,428**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1,392,000	46,400	0.83%	11,554	**5,777**
방문강사 (학습지교사 포함)		1,016,300	33,877	0.93%	9,452	**4,726**
가전제품 설치기사		2,932,000	97,733	0.93%	27,268	**13,634**
화물차주		4,310,000	143,667	1.93%	83,183	**41,592**
보험 설계사	생명	2,623,000	**87,433**	0.73%	19,148	9,574
	기타	2,183,000	**72,766**	0.73%	15,936	7,968
건설기계 종사자		2,254,040	**75,134**	3.73%	84,076	42,038
골프장캐디		2,454,540	81,818	0.73%	17,918	8,959
택배기사		2,200,000	73,333	1.93%	42,460	21,230
퀵서비스기사		1,454,000	48,466	1.93%	28,062	14,031
대출 모집인	여신	1,944,000	64,800	0.73%	14,191	7,096
	중계	2,638,000	87,933	0.73%	19,257	9,629
신용카드 모집인		1,756,000	58,533	0.73%	12,819	6,409
대리운전기사		1,756,000	58,333	1.93%	33,891	16,945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책 발표

- 내일부터 3주간 전 직원이 심사하는 집중 처리기간 운영 -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 29일(월) 10시,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책**을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처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 6.26 긴급하게 **전국 기관장 회의를 소집**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하였고,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본부 및 지방관서 전직원**이 심사업무를 병행하는 **집중 처리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6월 1일부터 신청을 시작하여 **신청 건수가 90만 건을 넘어섰다.**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지방관서 업무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빠른 처리를 위해

* **(고용유지지원금)** '19년 1,514개소 7.7만명 → '20년 6월까지 누적 73,178개소 150만명

(가족돌봄지원) 코로나 이후 신규, '20년 6월까지 누적 17만명

(실업급여 수급자 수) '19.1~5월 55만 8천명 → '20.1~5월 67만 7천명

○ 서울·세종·부산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업무를 전담**하는 8개 **지급센터를 설치**하고, 1,30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 다만, 모든 국민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저소득 취약계**층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 감소**가 있는 분을 지원하고 있어 **지급요건 등에 대한 심사 및 확인이 필요**하다.

- 이 과정에서 **증빙서류 미비로 인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80% 이상**이고, 제출 서류가 다양하여 심사 및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참고] 증빙서류 미비로 인한 보완 사례

▲ 2019년 연소득·연매출을 확인할 수 없는 ①**2018년 귀속 국세청 자료** 등을 제출한 사례, ②**종합소득세 접수증**, ③**신고결과서 등**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확인이 불가한 자료를 제출한 사례

▲ '20.3~4월, 비교대상기간('19.3월, '19.4월, '19.12월, '19년 월 평균, '20.1월 중 유리한 기간 선택)의 **소득 또는 매출내역 중 일부를 누락**한 사례
(예) '20.3월, '20.4월 신용카드 매출내역 → 제출
비교대상기간으로 선택한 '19.3월 신용카드 매출내역 → 미제출

▲ 통장 내역 제출 시, **급여를 표시하지 않고 전체 거래내역을 제출**하는 사례

□ **6월 30일부터 3주간** 운영하는 집중 처리기간에는 본부와 지방관서 **전 직원**이 모두 참여하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심사를 진행**한다.

○ **먼저 신청한 신청건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처리**하여, 신청일로부터 최대 한달 **이내에는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또한, 증빙서류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조금 더 쉽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심사 기준도 간소화**한다.

○ 코로나 이전의 소득에 대해 **통장 내역**을 제출할 경우 입금자 관련 증빙을 간소화하고(본인확인서 등)

○ 증빙서류도 현재보다 다양하게 인정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간소화될 예정이다.

□ 이번 회의에서 이재갑 장관은

○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업무가 크게 가중된 와중에도,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전 직원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히면서

- ”코로나19로 인해 **지원금이 절실한** 분들께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하여 **생계에 즉각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으나,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다**”라며

- “고용노동부 **전 직원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니 신청해주신 분들께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하였다.**

□ 또한, “**증빙서류 미비**로 **보완**을 거쳐야 하는 것이 **업무 처리가 늦어지는 주된 이유**이므로, **꼼꼼하게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주시면 **업무 처리**가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 임세희 팀장 (☎044-202-7314), 박경구 사무관(044-202-738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참 고 현재 주요 증빙서류 보완 사례

1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미비 사례

↳ '19년 연소득 또는 연매출 증빙서류

X : 보완이 필요한 사례: 소득 또는 매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음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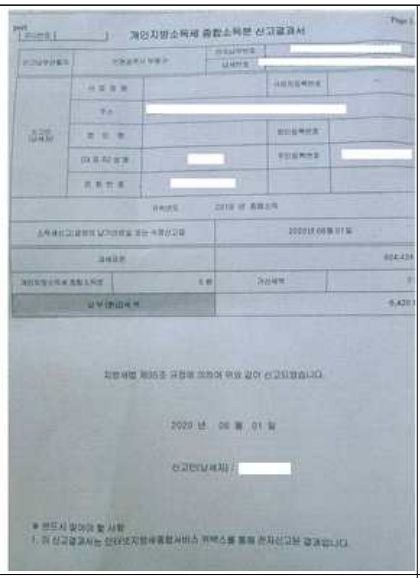

종합소득분 신고결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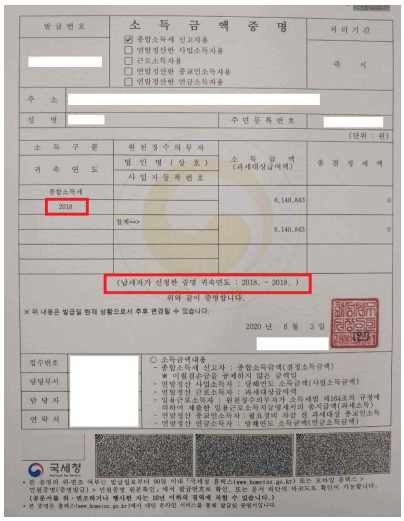

2018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

O : 제출이 잘 된 사례: 총 소득금액 및 매출액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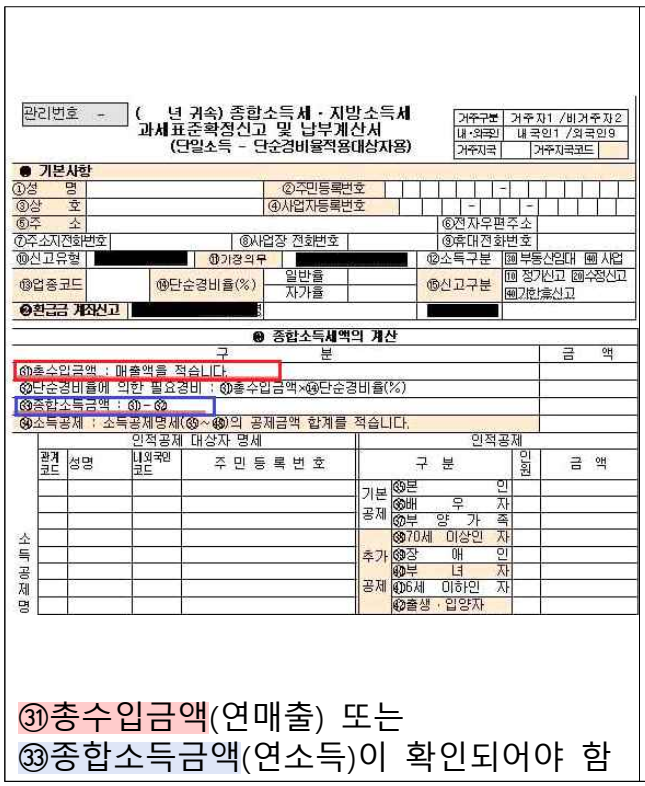

㉛총수입금액(연매출) 또는
㉝종합소득금액(연소득)이 확인되어야 함

⑨총수입금액(연매출) 또는
⑪소득금액(연소득)이 확인되어야 함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2 소득 또는 매출내역 중 일부를 누락한 사례

↳ '20.3~4월, 비교대상기간 비교를 통한 소득감소 여부 증빙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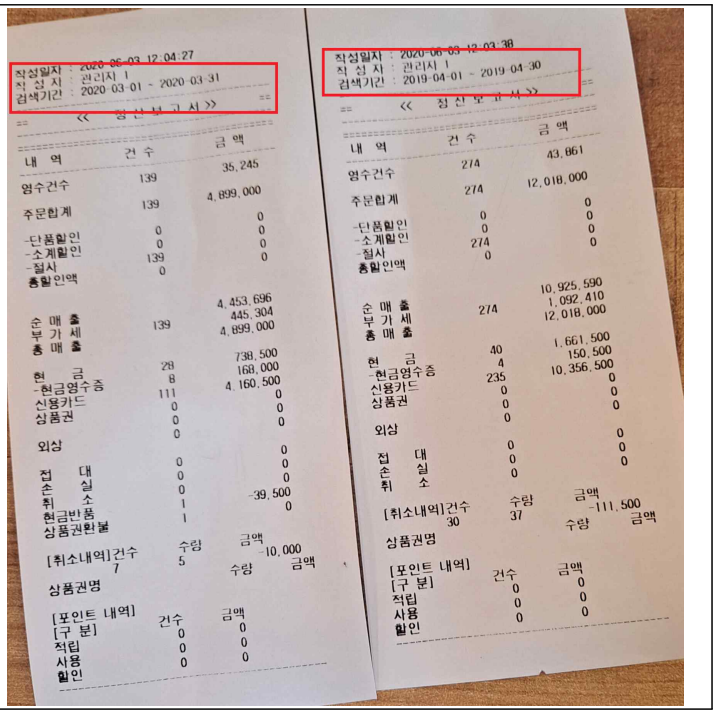

➜ 소득감소를 증명하기 위해 비교대상 년·월('19.4월)과 '20.3월과 20.4월 소득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나, '20.4월분을 누락한 사례
(비교대상 년·월 소득을 누락한 경우도 다수 발생)

3 급여를 표시하지 않고 통장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한 사례

↳ '19년 연소득 또는 '20.3~4월 및 비교대상기간 소득 증빙서류

X : 보완이 필요한 사례	O : 제출이 잘 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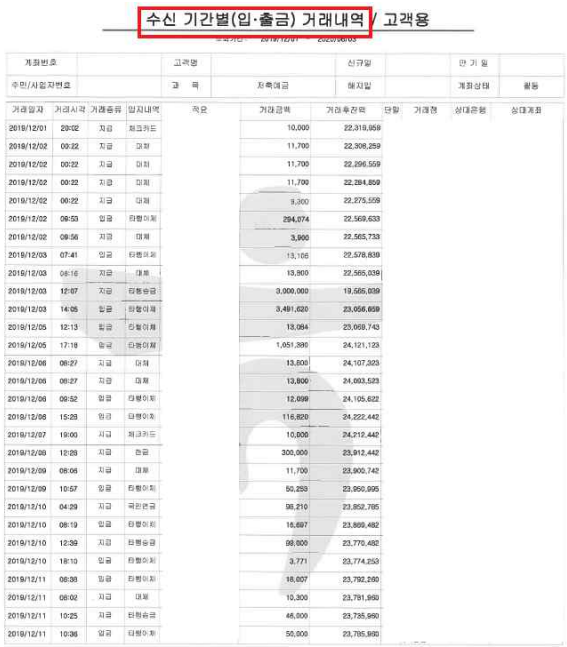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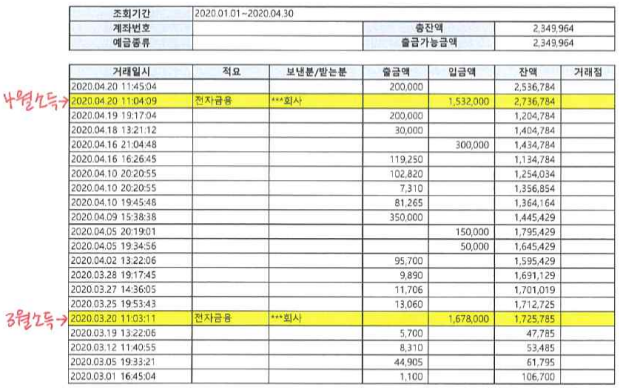
입·출금 거래내역이 섞여 있어 어떤 것이 노무에 따른 소득인지 확인이 어려움	형광펜 등으로 소득을 표시하여 제출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 **[개 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 방식 지원모델**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16.7월)

○ **신규취업 청년**의 **일정기간 근속 및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보태어, **만기 시 일시금을 수령**하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

○ **(청 년) 만 15~34세**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

* 생애최초 취업자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보 가입 총 12개월 이하' 가입 가능(3개월 이하 단기가입 기간은 기간산정 시 제외)

○ **(기 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가능)

□ **[지원방식]** 가입기간 동안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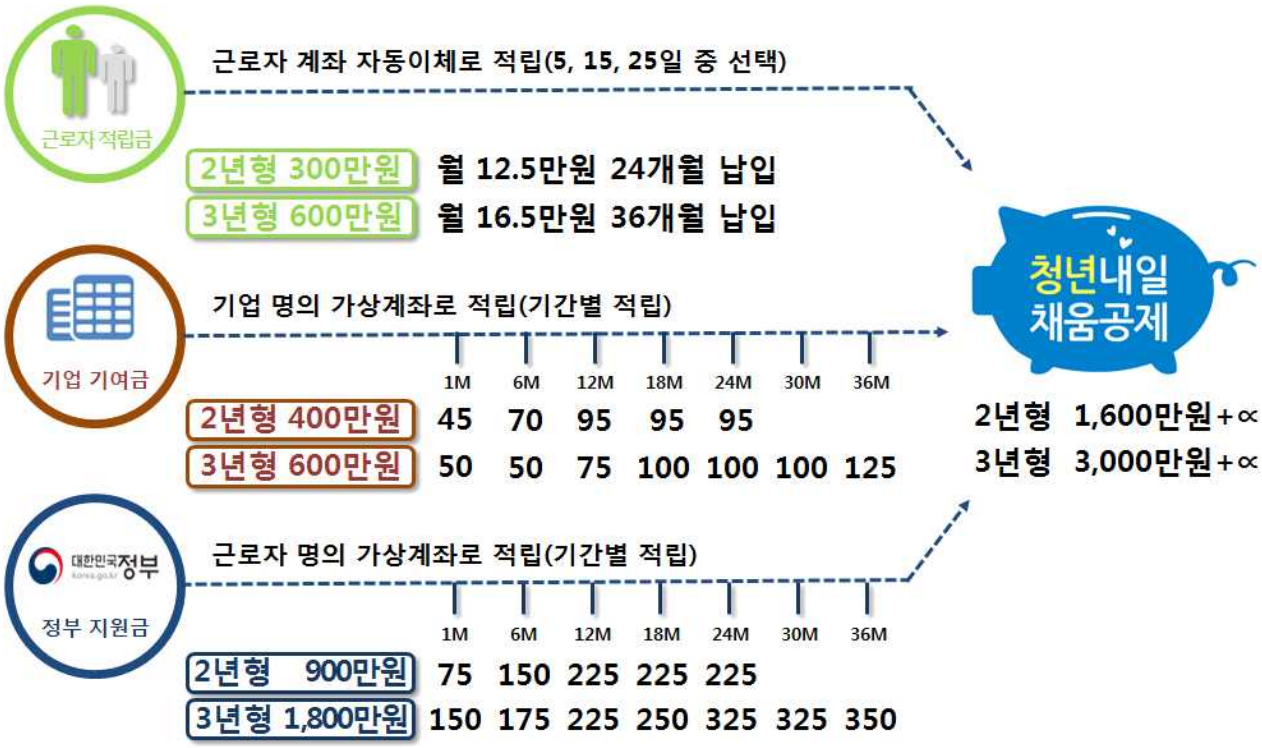

* 기업은 2년 450만원 또는 3년 670만원의 지원금 중 400만원 또는 600만원을 청년에게 기여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 **[중도해지] 본인 납입분 전액** 및 **지원금 일부**를 해지금으로 지급

○ **(본인 납입분)** 해지 시까지의 납입액 전액 **환급**(해지사유 무관, 2, 3년형 동일)

○ **(기업 기여금)** 해지 시까지 적립된 기업기여금 **전액 정부 환수**(")

○ **(정부 지원금)** 해지 시까지 적립된 **지원금의 일부**를 청년에게 지급
(2년형은 50%, 3년형은 30% 수준)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기관 현황 [총 4개소]

운영기관명(대표전화)	운영기관명(대표전화)
(주)커리어넷 서울북부지사(02-2006-9583)	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02-3399-7651)
인크루트알바콜(주)서울북부지사(02-2186-9059)	(사)한국직업지도진흥원 노원지부(02-6959-5570)

2020 기업지원제도 안내

1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종류

● 서울북부고용센터 서식자료실→ “사업주가 알아야 할 기업지원 등 주요 내용” 검색

1	고용창출장려금	①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심사형, 요건형) ② 청년추가고용장려금 ③ 국내복귀 기업 지원(심사형) ④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심사형) ⑤ 고용촉진장려금지원
2	고용안정장려금	① 정규직 전환지원(심사형), ② 워라밸일자리장려금 ③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심사형), ④ 출산·육아기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3	고용유지지원금	① 고용유지지원금, ② 무급 휴업·휴직고용유지지원금
4	장년고령자고용장려금	①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②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2 중복지원 사업 대상

양 장려금	중복 시	지원 비율
일자리 함께하기 (100% 지급)	고용창출장려금	+ 70% 추가지원
	고용안정장려금	+ 100% 추가지원

3 문의처

❍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기업지원팀 (☎ 02-2171-1800~5)

○ 기업지원 사업별 주요 내용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지원내용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공모형)** 교대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 1~2년 지원 -임금감소액보전: 월 최대 40만원 지원(사업주 보전임금의 80%한도)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월 40~100만원, 1~2년 지원 -임금감소액보전: 월 최대40만원, 1~2년 지원(사업주 보전임금의 80%한도)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 청년(만15~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이상 중소, 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미만도 가능) 사업주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 3년지원**
	국내 복귀 기업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
	신중년적합 직무고용지원	· 만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 전환지원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임금증가 보전금: 월 최대 60만원,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도록 한 사업주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임금감소 보전금: 월 최대 40만원, 대체인력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20만원**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확대하여 소속 근로자가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 1주당 5~10만원,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시스템 구축비의 1/2 이내, 2,000만원 한도(기업당)**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 육아휴직등 부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 · 대체인력지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해당 근로자 1인당]** **-대체인력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육아휴직등 부여 간접노무비: 육아휴직 월30만원(대규모기업 제외),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월30만원(대규모기업 10만원)**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 지원사항 별도 문의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 지원사항 별도 문의
장년·고령자 고용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을 초과하여 고용 **[지원수준] 기준고용률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근로자수의 20%까지. 다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는 지원기준율 산정 시 제외**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하는 사업주 **[지원수준]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분기별 신청), 최대 2년간 지원**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